

---

#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전문위원 정준화

---

## I.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며,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영업, 고율의 이자 지급 등은 서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신용불량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개인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위반 등 범죄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불법채권추심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받기도 함
-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채무자들의 재무건전성 및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법위반죄,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대하여 적절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 ▣ 대부업법<sup>1)</sup>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9 ①	제1호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제4호	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제5호	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 19 ②	제1호	제5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제2호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호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제4호	제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제5호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제7호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제8호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호	제11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제10호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이하 벌칙조항은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어 2016. 7. 25.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을 기준으로 한다.

■ 채권추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5 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5 ②	제1호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제3호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제4호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 15 ③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11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 관련 특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대부업법 § 19 ① 제1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444 제22호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 제1항 또는 제360조 제1항(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 11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년 이상의 징역 (취득수수료의 10%-100% 벌금)
		1. 수수료액이 연 10억 원 이상일 때	
	2. 수수료액이 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징역 (취득수수료의 10%-100% 벌금)	
대부업법 § 19 ② 제3호 관련	이자제한법 § 8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 가. 대부업법위반죄

#### ▣ 대부업법 19조 1항 1호(미등록 대부업 등) ⇒ 포함

- 대부업자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 ⇒ 대부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항
-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고(635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72.5%를 차지), 실형 선고 사건 중 본조가 적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34건/49건으로 전체 실형 사건 중 69.3%를 차지)
- 판결문 검색시스템[기간 제한 없이 조문 내지 구성요건 키워드로 검색(1심 기준, 정식재판청구 사건 제외), 검색방법은 이하 같다]에 의하면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 66건이 검색됨

#### ▣ 대부업법 19조 1항 2호(기망의 의한 등록 등) ⇒ 제외

-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조가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사건발생빈도가 거의 없어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지 않고, 유의미한 양형통계자료도 없어 적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도 어려움

#### ▣ 대부업법 19조 1항 3호(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금지 등 위반) ⇒ 제외

-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조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3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0.3%를 차지), 위 3건 모두 독립적인 단일범이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 등과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리
- 미등록 대부업 행위의 예비 내지 준비행위에 불과하거나 경합범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이 강함

#### ▣ 대부업법 19조 1항 4호(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 ▣ 대부업법 19조 1항 5호(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공정거래법 67조 6호, 16조(시정조치 등), 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로도 포섭이 가능
    -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 ▣ 대부업법 19조 2항 1호(상호 등 사용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미등록 대부업의 예비 내지 준비행위에 불과하거나 위 죄와 경합범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낮음
    -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이 강함
  - ▣ 대부업법 19조 2항 1의2호(명의 등 대여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1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0.1%를 차지), 별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없음
  - ▣ 대부업법 19조 2항 2호(서류의 용도 외 목적 사용)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2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0.2%)
    -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의 규정임
  - ▣ 대부업법 19조 2항 3호(이자율 제한 위반) ⇒ 포함
    - 국민의 경제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된 조항으로서 금융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항 중 하나임
    - 적용된 사례가 19조 1항 1호 다음으로 많고(159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18.2%), 판결문 검색시스템상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37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빈도수가 적지 않음
-

- 
- 대부업법 19조 2항 4호(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금지 등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 대부업법 19조 2항 5호(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금지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 대부업법 19조 2항 6호(제한 중개수수료 위반) ⇒ 포함(다만, 11조의 2 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함)
    - 다만, 11조의2 1항 위반한 경우는 제외(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경우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사례도 없음)
    -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미등록대부중개업자 포함)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
    - 적용된 사례가 19조 1항 1호, 19조 2항 3호 다음으로 많고(48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5.5%), 판결문 검색시스템상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17건 정도로 확인되어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법 19조 2항 7, 8, 9호(중개수수료 제한 위반) ⇒ 제외
    - 국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 각 법 조가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업법 19조 2항 10호(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 
- 행정법규 위반의 성격이 강함

## 나. 채권추심법위반죄

### ▣ 채권추심법 15조 1항(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 포함

- 채권추심법의 가장 핵심 조항임
- 적용된 사례가 19조 1항 1호, 19조 2항 3호, 6호 다음으로 많고(22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2.5%), 판결문 검색시스템상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31건으로 확인됨
- 형법상 폭행(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협박(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체포·감금(5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과 비교하더라도 법정 형이 더 높아 위 각 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본조의 양형이 기준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있음

### ▣ 채권추심법 15조 2항 2호 ⇒ 포함(다만, 9조 2, 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함)

- 9조 4, 7호 위반행위(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및 9조 6호 위반행위(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변제 요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 채무자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9조 2, 3, 5호 위반행위와 구별되고,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음
- 9조 2, 3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또는 전화 등인 반면, 9조 5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변제자금 마련 강요로 구별되는바, 하나의 소유형 내에 포섭할 경우 동일한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행위태양이 유사한 9조 2, 3호 위반행위의 행위태양이 보다 유사하고, 9조 5호 위반행위는 다소 이질적임
- 9조 2, 3호 위반행위가 9조 5호 위반행위에 비해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로 보임

▣ 채권추심법 15조 2항 1, 3, 4호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
-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보호법익도 상이하여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보임

▣ 채권추심법 15조 3항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낮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4조 2항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1조 1항은 사건 수가 많지 않고,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이 강하거나 특수한 분야의 어음유통과 관련된 규정으로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이자제한법위반 ⇒ 제외

- 법정형이 더 높은 대부업법 19조 2항 3호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범적 의미가 충분히 확보됨

## 다.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 1) 대부업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9 ①	제1호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9 ②	제3호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2) 채권추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5 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5 ②	제2호	제9조 제2, 3호를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III. 범죄유형 분류

#### 1. 유형분류 검토

- ▣ 대부업법위반죄와 채권추심법위반죄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을 공통으로 하므로, 구성요건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별 범죄가 많고, 실제에 있어서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음
- ▣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부업법위반행위는 대부업 운영과 관련된 행위인 반면, 채권추심법위반행위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행위로 근거 법률에 따라 행위태양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 따라서 근거 법률을 기준으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각 대유형 내에서는 법정형과 죄질에 차이가 있는 개별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2. 최종 유형분류

1. 대부업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2	미등록 대부업 등			
2.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IV. 형량범위 검토

###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

#### ▣ 법정형 및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 2. 대부업법위반 형량범위 검토

### 가. 미등록대부업법(대부업법 19조 1항 1호)

####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 선고내역

세부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대부업법	19조1항1호	수	34	601	635
		비율	5.4	94.6	100.0

#####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5	16	18	24	30			36
대부 업법	19조 1항1호	수	3	62	17	206	149	81	87	1	2	16	9	1	1	635	8.25
		비율	0.5	9.8	2.7	32.4	23.5	12.8	13.7	0.2	0.3	2.5	1.4	0.2	0.2	100.0	

#### 2) 형량범위 제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 기본영역은 현행 양형실무를 조금 상회함. 선고형량 중 85.4%가 기본영역에 포섭될 것으로 예상됨
- 양형자료 조사결과상 징역 3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4년으로 설정

나. 이자율 제한 위반(대부업법 19조 2항 3호)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선고내역

세부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대부업법	19조2항3호	수	6	153	159
		비율	3.8	96.2	100.0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5	16	18		
대부업 법	19조 2항3호	수	1	1	22	6	75	26	19	7	0	0	2	159	6.86
		비율	0.6	0.6	13.8	3.8	47.2	16.4	11.9	4.4	0.0	0.0	1.3	100.0	

2) 형량범위 제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 기본영역은 현행 양형실무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고, 양형자료 조사 결과의 선고형량 중 93.1%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 가중영역의 경우, 양형자료 조사결과상 징역 18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한을 2년으로 설정

다. 중개수수료 수령(대부업법 19조 2항 6호 중 11조의2 2항 위반 행위)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선고내역

세부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대부업법	19조2항6호	수	6	42	48
		비율	12.5	87.5	100.0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대부업 법	19조 2항6호	수	0	0	2	1	13	15	7	10	48	8.35
		비율	0.0	0.0	4.2	2.1	27.1	31.3	14.6	20.8	100.0	

2) 형량범위 제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 범죄의 성질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이자율 제한위반 등’ 과 반드시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으므로 양 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가중영역의 경우, 양형자료 조사결과상 징역 1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2년으로 설정

3. 채권추심법위반 형량범위 검토

가. 폭행·협박 등 추심행위(채권추심법 15조 1항)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선고내역

세부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채권추심법	15조1항	수	1	21	22
		비율	4.5	95.5	100.0

###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전체	
채권 추심법	15조 1항	수	0	0	5	0	8	5	2	2	22	22
		비율	0.0	0.0	22.7	0.0	36.4	22.7	9.1	9.1	100.0	6.90

## 2) 형량범위 제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기본영역을 [4월 - 1년 6월] 또는 [6월 - 1년 6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4월 - 1년 6월]로 설정할 경우, 양형자료 조사 결과의 선고형량 100%가 포섭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과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고, 징역 4월을 형량범위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형량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6월 - 1년 6월]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위와 같이 형량범위를 설정할 경우, 양형자료 조사 결과의 77.3%가 기본영역에 포섭되게 됨.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이나 위계·위력 등 행위태양 및 죄질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형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형량구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중영역의 경우, 양형자료 조사 결과상 징역 1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특성상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섭하기 위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높이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3년 6월로 설정함

- 한편 이 소유형의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가중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중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은 10월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채권추심법 15조 2항 2호, 다만 채권추심법 9조 2, 3호를 위반한 자)

###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 선고내역

세부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채권추심법	15조2항	수	1	3	4
		비율	25.0	75.0	100.0

####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5	16	18	24	30	36			
채권 추심법	15조 2항	수	0	0	1	0	3	0	0	0	0	0	0	0	0	0	0	4	5.5
		비율	0.0	0.0	25.0	0.0	7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2) 형량범위 제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 ‘반복적’, ‘야간’,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기본영역의 하한과 상한의 폭을 6개월 정도 두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 가중영역의 경우, 행위태양의 특성상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섭할 필요가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재산상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 가중영역 [4월 - 1년 6월]의 상한보다 높은 징역 2년으로 설정
- 이 소유형의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가중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중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은 6월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최종 권고 형량범위

1. 대부업범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채권추심범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V. 양형인자

###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

###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 가. 「1. 대부업법위반」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범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1) 특별감경인자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부업법위반죄에서 단독범뿐만 아니라 공범 비율(44.7%)이 상당히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하여 주범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벌성의 차이가 큼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자의 역할,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다르므로,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참고. 실제 사례에서도 영업성이 열린 경우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2) 특별가중인자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인적 조직 내지 결합성은 영업성을 띠는 대부업법위반죄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임

- 조직적·전문적 영업형태와 단순 영업형태를 구분하고 가담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양형구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 초과이자 수령, 중개수수료 수령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액’에 따라 불법성의 정도가 상당 정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영업기간, 대부 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기간과 횡수가 미등록대부업자 등이 궁극적으로 수취하게 되는 이득액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라는 기준으로 이를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채권추심범위범죄 포함)

### 3) 일반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대부업범위범죄는 대체로 범죄수익이 중요한 양형요소이고, 판결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이득액의 다과가 가중적 또는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 
-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4) 일반가중인자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대부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가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사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이득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취득 여부를 양형에서 고려함
  -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등 다수의 범죄군에 반영된 인자임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장부를 폐기하는 등의 사례 있음
-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나. 「2. 채권추심법위반」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대부업범위반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1) 특별감경인자

###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및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모두 ‘그 수단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채권추심법의 구성요건에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및 위계, 위력이라는

---

수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단으로 하는 채권추심법위반죄에서도 그 수단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법위반죄에서 단독범뿐만 아니라 공범 비율(50%)이 상당히 높고, 앞서 대부업법위반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이 다양하여 그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손해의 전보 여부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이 상당한 점, 추심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 등 유사 범죄군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 크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라는 양형인자로 이를 포섭하여 가중처벌 필요성이 있음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 범죄군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양형기준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 3) 일반감경인자

-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채권추심법위반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동시에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바, 피해자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 손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조직적 사기, 누범장물,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등과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4) 일반가중인자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대부업법위반 유형에서의 검토와 같음
-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VI. 집행유예 기준

### 1. 대부업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2.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li>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